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50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송석준 · 박상웅 · 조경태
김형동 · 이현승 · 유상범
고동진 · 이종배 · 윤한홍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복장·장비·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봉사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미포함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아가, 모범운전자들은 공익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보

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항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및 보험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생략)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u>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	②-----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③ <u>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u>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	④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